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050호

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
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. 12. 28

국토해양부장관

1. 시행일 : 2011. 1. 1
2. 2011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

가. 지적측량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		지 역 별		
	토 지구 분		단 위	면적(m ²)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
신규등록 측 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	1,500	156,000	219,000	246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	5,000	193,000	255,000	283,000
	수 치		1 필지	1,500	430,000	602,000	678,000
	토지구획정리		1m ² 당		418.3	428.0	440.9
	경지구획정리				54.2	55.5	57.2
등록전환 측 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	1,500	176,000	232,000	265,000
	수 치		1 필지	1,500	502,000	702,000	835,000
분할측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	199,000	260,000	295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	251,000	315,000	352,000
	수 치		1 필지 (분할후)	1,500	310,000	411,000	471,000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		지 역 별		
	토 지 구 분		단 위	면적(m ²)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
경계복원 측 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	300	304,000	398,000	453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	3,000	379,000	482,000	539,000
	수 치		1 필지	300	505,000	601,000	660,000
지적현황 측 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	179,000	233,000	266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	226,000	284,000	318,000
	수 치		1 필지 (분할후)	1,500	280,000	370,000	423,000
축척변경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	265,000	375,000	423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	334,000	446,000	497,000
	수 치		1 필지 (분할후)	1,500	343,000	486,000	549,000
도시계획선 명시측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	300	304,000	398,000	453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	3,000	379,000	482,000	539,000
	수 치		1 필지	300	505,000	601,000	660,000
지적불부 합지측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	186,000	245,000	276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	234,000	291,000	324,000
등록사항 정정측량	토 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	234,000	308,000	348,000
	임 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	295,000	367,000	408,000
	수 치		1 필지 (분할후)	1,500	243,000	344,000	407,000

나.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지 역 별			
		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	
지적삼각 점 측 량	G P S		1 점 당	435,000	444,000	456,000
	T / S		1 점 당	798,000	816,000	840,000
	· GPS장비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하며, T/S장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T/S지적삼각점측량 단가에 50%를 적용한다.					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	지 역 별		
			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
지적도근 점 측 량	G P S		1 점 당	94,000	96,000	117,000
	T / S	배 각 법	1 점 당	80,000	81,000	99,000
		방위각법	1 점 당	74,000	76,000	93,000
지적확정 측 량	토지구획정리		1m ² 당	746.8	764.0	826.5
	경지구획정리			54.2	55.5	60.1
	·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과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%를 적용한다.					

다. 도면작성업무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		지 역 별		
	구 분	측 척 별	단 위	기 준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
도 면 작 성	토 지	1/500,1/600,1/1000 1/1200,1/2400	1 장 당	지적도크기	9,000	10,000	10,000
		1/3000,1/6000			12,000	12,000	13,000
	전산화일		1 장 당	지적도크기	105,000	107,000	111,000
	·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, 기준규격의 1/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%를 적용한다.						
자 동 제 도 (좌표독취)	토 지	1/600, 1/1000 1/1200,1/2400	1 장 당	지적도크기	173,000	177,000	182,000
	임 야	1/3000,1/6000			191,000	195,000	201,000
자 동 제 도 (좌표입력)	토 지	1/600, 1/1000 1/1200,1/2400	1 장 당	지적도크기	117,000	120,000	123,000
	임 야	1/3000,1/6000			129,000	132,000	136,000
자 동 제 도 (파일제공)	토 지	1/600, 1/1000 1/1200,1/2400	1 장 당	지적도크기	77,000	79,000	81,000
	임 야	1/3000,1/6000			87,000	89,000	92,000
도시계획선 인 선	토 지	1/600, 1/1000 1/1200,1/2400	1 장 당	지적도크기	56,000	57,000	59,000
	임 야	1/3000,1/6000			97,000	99,000	102,000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		지 역 별		
	구 분	축 척 별	단 위	기 준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
도시계획 도면전산 작성업무	토지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장당	지적도크기	209,000	214,000	219,000
	임야	1/3000, 1/6000			287,000	294,000	302,000
	수 치				148,000	151,000	155,000
연속지적도 작성업무	토지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장당	지적도크기	49,000	51,000	52,000
	임야	1/3000, 1/6000			51,000	52,000	54,000
	수 치				43,000	44,000	45,000
연속지적도 품질개선	토지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장당	지적도크기	31,000	32,000	33,000
	임야	1/3000, 1/6000			35,000	36,000	37,000
	수 치				7,000	7,000	7,000
시설편입지 면적측정	토지 (도해)	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 필지 (분할후)	1,500m ²	34,000	45,000	50,000
	임야 (도해)	1/3000, 1/6000	1 필지 (분할후)	5,000m ²	43,000	53,000	60,000
	수 치		1 필지 (분할후)	1,500m ²	54,000	74,000	84,000
조서작성	전필조서		1 장당	A4	3,000		
다목적지적 전산처리	전산화일		1m ² 당		16.0	16.3	16.8
측량결과도 전산화	좌표독취 (스캐닝+벡터라이징)		1 장당	지적도크기	35,000	36,000	37,000
	·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.						

라.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 종목별	기 준		지 역 별			
	구 분	단 위	군지역	시지역	구지역	
지 적 이 용 현 황 조 사	토 지	1/500, 1/600, 1/1000 1/1200, 1/2400	1필지당	23,000	33,000	36,000
	임야	1/3000, 1/6000		29,000	40,000	43,000
침수흔적지 조사측량	-		1㎡당	48.3	49.5	51.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,000,000㎡를 기준하였으며,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%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, 측량지구의 면적이 30,000㎡이하인 경우에는 30,000㎡의 면적으로 한다. · 본 단가는 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%를 감면 적용한다. 					
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	지구계점		1㎡ 당	242.2	247.8	268.5
	전체지구			1,121.5	1,147.9	1,244.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,000㎡를 기준하였으며,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하며, 측량지구의 면적이 50,000㎡이하인 경우에는 50,000㎡의 면적으로 한다. · 본 품은 지구계점에 대한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,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,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지구계점 및 전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.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. 					
다목적 지적측량	-		1㎡당	383.7	392.5	404.3

3.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
4.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
5.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 중 분할측량, 경계복원측량, 지적현황측량,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본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.
6. 2011 지적측량수수료표 :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
※ 홈페이지 주소 : www.mltm.go.kr
7. 첨 부 :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. 끝.